

## 논 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0호(2023/여름)  
<https://doi.org/10.21738/JHS.2023.8.50.7>

# 안락사 사례로 보는 생명과 권리의 문제

양준석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생사학·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낯선 죽음의 도래
- III. 안락사와 존엄사
  - 1. 안락사의 개념
  - 2. 존엄사의 개념
  - 3. 자살,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자살의 개념
  - 4.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구분
- IV.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례
- V. 살 권리와 죽을 권리의 쟁점
  - 1. 안락사 찬성
  - 2. 안락사 반대
- VI. 마무리

---

\* iyjs64@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금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인지과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예전에 가졌던 생명에 대한 믿음은 치워버린지 이미 오래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오로지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실제 생명복제, 생명연장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담보하며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며 특히 윤리학의 관점에서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있다. 특히 생명과 삶, 죽음에 주요한 원리와 논의를 끌어내면서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다움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철학적 입장에선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딜레마를 떠올리면 육체적인 고통(pain)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suffer)을 겪고 있는 임종기의 환자나 생의 마지막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진정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예를 들면 안락사<sup>1)</sup>나 존엄사<sup>2)</sup>와 같은 불편한 진실들이 수면

- 
- 1) 역사적으로 안락사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이다. 〈황제열전〉에서 카이사르가 “신속하게 고통 없이… 죽복받은” 죽음을 ‘안락사’라고 칭한 것이 역사에 따라 윤리와 이념 및 행위의 주체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2) 존엄사는 존엄성을 죽음의 의미에 붙이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존엄사는 1972년 오리건주 주지사 맥컬(Tom McCall)이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개념에 충격을 받을까 봐 주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제 안락사에서 반대론자들은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등과 같이 사람들의 자살의 오명에 이를 덧씌우려는 의도로 자살이나 살인이라는 개념을 자주 쓴다. 이에 비해 찬성론자들은 ‘존엄사’, ‘조력죽음’, ‘자비사’ 등과 같은 연민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호소한다. 이처럼 안락사는 쓰는 용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용이하게 풀어내는 의미를 풀어냄으로써 의미전쟁을 벌이고 있다.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도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5월 연명의료중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등으로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꺼내면서 제도화를 끌어내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 2022년 6월 안규백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위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논의로 의학과 법학, 윤리학과 철학 등의 관련 학계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쟁은 통과 여부를 떠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물론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명은 신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선 사람들은 이 물음 자체를 옳은가 그른가의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리한 논쟁들이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

특히 '조력존엄사법' 논의를 통해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논의는 시작되었고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정리와 특히 논의과정은 매우 중요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안락사와 관련된 논의가 자칫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자 노력해야 한다. 실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닦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야 제대로 갈 수 있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낯선 죽음의 이해와 존엄사와 안락사의 정의를 통해 개념적 혼동에서 오는 인식의 오류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안락사 관련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선행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인식변화를 고려하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 II. 낯선 죽음의 도래

프랑스 미시사(微視史) 연구의 역작인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의 『죽음의 역사』는 서양사회의 중세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아리에스는 서양 사회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몇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죽음 장소의 변화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지 않게 됐다. 죽음 환경은 집에서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가족들과의 임종에서 병원에서 수많은 기계 장치와 의사나 간호사들이 개입하는 임종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특징은 죽음에 대한 의식변화이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죽음에 대해 가졌던 낭만주의적인 '위선'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죽음은 추한 것이 되어버렸다. 종교적 전략, 미학적 전략이 사라지고 은폐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된 오늘날의 죽음은,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끔찍한 것이 되었다. 이제 방법은 하나, 그것을 잊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 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죽음 그 자체보다 죽어감의 문제가 더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100세 시대(Homo Hundred)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명 연장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지 축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실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인은 과거의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죽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로 안락사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은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익숙한 죽음’에서 ‘낯선 죽음’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을 오래전 의학적으로 예고 받는다는 사실에서 이전의 죽음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 III. 안락사와 존엄사

####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어 ‘euthanatos’에서 기원이다. eu는 ‘좋은’, ‘평온한’, ‘행복한’을 뜻하는 접두어이고 thanatos는 죽음신을 말하는 합성어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술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환자의 죽음을 유발시키거나 허용하는 관행이나 행위”(임종식 1999, 299)를 말한다.<sup>3)</sup> 처음에는 ‘자비로운 죽음(mercy-killing)’의 의미로 쓰이다가 최근에는 ‘품위를 유지한 채로의 죽음(dying with dignity)’라는 존엄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3) 이상복,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관점」, 『한국시민윤리학회』, 18/1(2005).

여기서 안락사는 죽음과정에 인위성이 개입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본래 그 시각에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을 죽게 한다는 것이 본질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 의지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반자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의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positive euthanasia), ‘소극적 안락사’(negative euthanasia)로 구분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에 따라 ‘능동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수동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구분한다. 안락의 목적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beneficent euthanasia),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로 구분한다.<sup>5)</sup>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안락사에 대한 분류

자의/ 타의	적극/ 소극	내용
자의적	적극적	환자의 뜻에 따라 의사가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의사조력자살’과 구분되는데 의사조력자살의 주체는 환자이다.
	소극적	환자의 뜻에 따라 치료중단이나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로 자연사(natural death) 또는 진정 안락사 <sup>6)</sup> 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 몇몇 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1976년 퀸란(Karen Quinla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4) 백수원,「죽음, 안락사, 생애 마무리에 관한 험법적 논의 – 생애 마무리 지원 법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미국헌법 연구』, 30/3(2019).
- 5) 조태구,「죽음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 조력 존엄사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존엄사와 안락사」,『죽음의 시공간』, 9(2023).

비자의적	적극적	환자의 고통과 심각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 자비적 안락사(beneficent euthanasia), 반고통사(antidysthanasia)라 한다.
	소극적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지만 죽게 내버려 두거나(letting die), 죽음을 느리게(slowing death) 또는 연명 치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반자의적	적극적	환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환자를 강제적으로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2. 존엄사의 개념

안락사와 더불어 자주 혼용되는 용어가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이다. 존엄사는 잔존여명(殘存餘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통보다 인간의 품위,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무게 중심을 좀 더 둔 의미이다.

존엄을 목적으로 소극적인 방법을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의 목적이 품위 있는 삶과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방법이나 의지는 무관하게 존엄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문헌으로 등장하는 존엄사는 미국 오리건(Oregon)주에서 1997년도에 제정한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기인한다.<sup>7)</sup> 이 법은 의사조력자살 PAS(Physician-Assisted Suicide)를 포함하므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안락사'도 허용하자는 주장으로

6) 진정 안락사(echte Sterbehilfe)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은 채 진정제나 마취제를 사용하여 고통만을 제거하여 환자를 자연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순수 안락사(reine Sterbehilfe)라고도 하며, 이 경우에는 살인죄와 관련한 생명단축이 문제되지 않고 고통제거를 위한 치료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자연사에 해당한다.

7)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J Korean Med Assoc』, 55/12(2012).

인식될 수 있어 존엄사에 대한 개념 규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sup>8)</sup>

철학에서 ‘존엄’이라는 말을 확립시킨 칸트(Kant)는 『윤리 형이상학 정초』<sup>9)</sup>에서 도덕이 하나의 궁극적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원칙에서 모든 다른 책무와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고 보편적 법칙을 따르려는 이성적 존재이기에 존엄하다고 했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로서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sup>10)</sup>는 정언명령을 따르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격인 한에서 존엄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 수립 자신은 바로 그 때문에 존엄성을,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 (무엇과도)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하고”<sup>11)</sup>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가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임을 말한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sup>12)</sup>는 정언명령의 내용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생명에 대해 자연법칙을 어긋나는 자살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칸트가 제시한 존엄성의 개념에 따르면 안락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

8) 이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발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존엄’이라는 개념에 사용하였기에 존엄이라는 말의 철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9) 임미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10) GMS 4:421.

11) GMS 4:435.

12) GMS 4:429.

문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기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존엄사로 정의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존엄사는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안락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sup>13)</sup>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안락사의 한 종류이고, 존엄사가 의사 조력 자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서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 구분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다.<sup>14)</sup> 실제 작년에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임.<sup>15)</sup>

- 
- 13) 연명의료의 중단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보도한 많은 언론 기사들이 이 사건을 존엄사 관련 사건으로 소개하고, 관련 법안의 이름이 ‘존엄사법’이었던 이유로 더广泛히 혼용과 오용되어 쓰이고 있게 되었다.
- 14) 현재 많은 문헌들에서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를 존엄사라고 지칭하는 동시에 소극적 안락사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혼란의 결과이다.
- 15)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2020),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986.

이 제안에서 '조력 존엄사'를 진술하고 있는데 조력 존엄사는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력 존엄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존엄'이라는 말로 대체함으로써 부정적 인상을 회고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사용으로 더욱더 존엄사가 오용되고 있으며, '안락사에 대한 찬성'을 '존엄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해함으로써 존엄사를 안락사의 한 종류로 이해하는 널리 확산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6)</sup>

### 3. 자살,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자살의 개념

안락사와 관련되어 자살, 조력 자살, 의사 조력 자살 개념이 혼용되어 인식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살(suicide)은 자신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끊는 행동을 통해 죽음을 도달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요소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intention)성이다. 만일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거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순교를 자살이라 하지 않는다.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환자가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도와주었을 경우 이를 조력자살이라 한다.

이에 비해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은 말기암 환자의 자살 도움 요청을 의사에게 하고 의사는 자살관련 정보, 치

---

16) 조태구, 「죽음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 조력 존엄사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존엄사와 안락사」, 『죽음의 시공간』, 9(2023).

사랑의 약물처방, 자살기계(suicide machine) 같은 수단을 통해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락사는 자살의 개념과 차이를 갖는데 안락사는 그 안락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환자의 고통을 옆에서 보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를 말한다.<sup>17)</sup> 이처럼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이나 치료가 더 이상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적극적·소극적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구분

이처럼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혼란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이나 의사 조력 자살처럼 구체적 행위 중심으로 용어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쓰여왔던 개념들이기에 기존에 쓰여왔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락사(euthanasia)는 좋은 죽음, 고통 없는 죽음이라 하지만 본질

17)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안락사를 “조용하고 안락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로 웹스터 1976년 새 국제사전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안락사의 주체가 환자 자신이 아닌, 그것을 수행하는 의사임을 언급한다. 이런 정의에서 순수한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뿐이다.

18) 최근에 진행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개념논쟁을 조태구는 재정리하였는데 안락사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의지적, 비의지적, 반의지적으로 구분하고 의사의 행동을 소극적, 적극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존엄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특수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단계, 2단계는 일반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단계로 나누고 생명이 아닌 치료에 대한 자기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 이전에 생명을 인위적인 행위로 마감하는 것으로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용어이다. 이에 비해 존엄사(death with dignity)는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으로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 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 IV.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례

신아연 씨의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는 안락사로 보는 생명과 권리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를 펴낸 신아연 씨는 2021년 8월 26일 안락사를 선택한 호주 교민 A씨의 스위스 안락사 현장 동행자 중 한 사람이다. 당시 A 씨는 64세로 폐암 말기 환자였고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2년 후 재발하였고 주치의에 의하면 기대여명을 석 달 정도 넘긴 상태로 ‘페가소스(Pegasos Swiss Association)’라는 안락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죽음 여행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사례라고 한다.

사실 A씨는 호주 교민신문 기자 출신 신아연 씨의 20년 독자라는 인연으로 이 여행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지켜보며 기록해달라고 그를 초대했다고 한다. A씨로부터 신아연 씨가 안락사 현장 동행 제안을 받은 건 원래 안락사 예정일 2021년 7월이었다고 한다. 당시 신아연 씨는 ‘안락사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여정에 동행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20여 년간 대화와 글쓰기

작업의 상대로 자신을 존중해준 A씨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기에 동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신아연 씨는 자신의 결정을 곧 후회했고 어떻게 하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지 A씨의 안락사 결정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연락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작가님!

저는 이제 아무와도 통화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감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sup>19)</sup>

2021년 8월 24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신아연 씨는 A씨 가족 및 친인들과 스위스 바젤의 어느 호텔에서 만났다고 한다. 먼저 도착한 A씨는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4박 5일간의 여행에 동행해준 여행객들의 호스트 격으로 참가자 하나 하나에게 미리 준비한 이야기와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

1인 소파에 앉은 A를 중심으로 7명이 빙 둘러앉아 독배를 들기 전 소크라테스(Socrates)와 제자들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처럼 그의 거침없는 고별사가 지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에 비유하며 이제 책의 마지막 장을 덮듯이 여기서 그만 끝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무지막지한 통증을 참느라 침대 매트리스가 온통 젖을 정도로 진땀 흘리던 때가 있었지요. 내가 그렇게 아파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한다면 자살과 다를 바 없으니까….”<sup>20)</sup>

---

19) 신아연,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책과 나무, 2022, 32쪽.

20) 같은 책, 59쪽.

2021년 8월 26일 A씨의 안락사는 스위스 바젤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이동한 거리의 한 건물에서 이뤄졌다. ‘GARAGE’ 팻말이 붙은 허름한 건물이었다. 직원은 안락사를 준비했고 건물 내 촬영 스튜디오처럼 차려진 방에서 ‘나 그만 갈게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A씨에게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물으니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A씨는

‘I’m sick. I want to die. I will die(나는 아프고 죽길 원하며 죽을 것이다)’란 말을 반복한 한 뒤 A씨 스스로 자신에게 꽂혀있는 주사기에 벨브를 돌려 약물을 투입하였다.<sup>21)</sup>

A씨가 안락사 후 2021년 11월 19일 공주에서 수목장으로 묻혔다. 이상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A씨의 사례이다.

다음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하기 4개월쯤 전 A씨와 신아연 씨가 나눈 이야기다.

그: … 죽음은 내시경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과 같지요. 깨어서 집으로 가지 못해요. 저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하여 공부했고 명상해 왔지요. 죽음에 관한 책들도 꽤 많이 읽었지요. 전생, 윤회, 임사체험 등에 관해서도

나: 그리고는 결론을 얻으셨나요?

그: 그런 셈이죠. 조금 일찍 가더라도 사뿐히 떨어지자. 매달린다고 매달려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니… 그렇다고 해도 가끔은 죽음이 두렵죠. 가끔은 무의식 깊숙이 감춰진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곤 하죠.

---

21) 같은 책, 97쪽.

나: 종교에 의지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 구체적으로 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삶 자체가 종교성을 떠나 존

재할 순 없지요. 특히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나: 그럼 선생님은 어디로 가시게 되나요?

그: 글쎄요. 어디든 가겠죠. 갈 곳이 있다면.<sup>22)</sup>

이 책을 통해 A씨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말기 암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고생 그리고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무너지는 인간상에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신아연 씨는 A씨의 죽음을 잘 짜인 한 편의 각본이자 매끈한 연출 같았다고 한다. 그 스스로 각본을 쓰고, 스스로 연출을 맡고, 스스로 주인공인 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다만 이 여정을 함께 동행했던 신아연 씨는 적지않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으며 초기 입장과 다르게 ‘안락사 반대론자’가 되었다고 한다.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불현듯 닥치는 조력 존엄사 입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공론화와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그는 “안락사 찬반을 논의하기 전에 죽음을 양지에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책을 출판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

22) 같은 책, 100~103쪽.

## V. 살 권리와 죽을 권리의 쟁점

2018년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David Goodal)은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언론에 타전 되었다. 104세에 이르러 안락사를 실행한 그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삶을 끝낼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고 하며 임종 직전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죽음의 문으로 의연히 퇴장했다고 한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은 있어도 죽음을 자축하며 퇴장하는 사건들을 통해 이제 안락사 논쟁은 본질적으로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전 안락사가 옳은가 그른가의 논쟁과 더불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인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7월 안락사에 관한 질문을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안락사 관련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전히 종교계를 위시해서 전통적인 죽음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안락사를 거부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죽음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명의 자율성에 대해 생명윤리학적 현장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안락사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안락사 찬성

안락사를 지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든다.

첫째,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은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듯이 행복추구권에서 자기 결정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행동할 수 있는 권리”<sup>23)</sup>가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기에 스스로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나이 들면서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질병과 늙어감의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육체적인 고통(pain)과 정신적인 괴로움(suffer)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기의 환자나 생의 마지막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 괴로움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스위스 신학자 한스 퀭(Hans Kueng)은 르몽지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삶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존엄성을 상실한 상태의 생존은 신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4)</sup>

셋째, 2024년이면 국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사실 의료기술로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을 향상되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그 이면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

---

23) 송삼용, 2023년 한국교회법학회 30회 학술세미나,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발표 논문.

24) 박충구, 「현대인의 낯선 죽음에 대해」, 『현상과 성찰』(2017).

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간병살인, 동반자살 등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사회에서 지금의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안락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sup>25)</sup>

## 2. 안락사 반대

안락사 반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듣다.

첫째,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하는 것이다. 존엄성은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명시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대전제로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가치와도 침해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의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 완화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생명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생명권은 선협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모든 가치와 권리의 기본중에 기본이라는 것이다.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것이라면 개인이 자기 생명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해치거나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때문에 안락사와 같이 자

---

25) 2019년 3월 8일 서울신문, 성인남녀 1,000명 안락사 관련 여론조사에서 안락사 찬성률이 81%를 차지하였고, 2021년 76%, 2022년 82%임을 감안한다면 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말기환자의 남은 여생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될 것이며, 미끄러운 언덕의 놀리에 의해 치매환자, 정신질환,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해 대상자 확대는 불보듯 뻔 할거라는 것이다.

셋째, 안락사를 시행하는 서구사회에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의 결정이 낮고 취약한 호스피스 인프라(암 사망자의 23%, 전체 사망자의 6.2%) 등 빈약한 사회적 간병정책으로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 체계확대가 선행되면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고통과 고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증 완화치료나 호스피스,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돌봄으로 안락사 요구를 낮출 수 있고 안락사보다 여타 의료기술의 과도한 오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찬성하는 입장은 변화된 사회에서의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규범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보인다. 다만 안락사에 관련 기존 논의의 반복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차원에서 안락사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는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안락사 관련 입법은 헌법과의 기존 판결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sup>27)</sup>

---

26) 윤영호, 2022년 연명의료 공개 Forum 발표논문,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현황 및 향후 대책”.

27) 윤영호, 2022년 조력존엄사 토론회, 2022년 8월 24일, 국회.

분명 오늘날 안락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죽음의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락사 관련 논의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안락사 논쟁의 출발점은 첫째, 고령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는 100세 시대라는 인간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괴로운 삶의 지평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4苦[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난 한 세기 동안 물질적 풍요에 따라 삶의 가치는 유용성에 따라 평가하는 효용주의적 관점이 드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칼 빈등(Karl Binding)의 “살 가치가 없는 생명(das lebensunwertes Leben)”<sup>28)</sup> 개념처럼 노화와 약해진다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며 두려운 것이기에 죽음을 받아들 수 있지만 쓸모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효용주의적 관점이 안락사 논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지금 시대의 죽음은 ‘낯선 죽음’으로 ‘처리 가능한 죽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적 개입으로 생명 연장이 가능하듯이 괴롭고 고통이 많은 말기나 임종기에 의료적 개입으로 생명 종결을 하는 것도 자율성에 기초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이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

---

28) 1920년, 칼 빈등과 알프레드 호해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파괴를 허용하기’라는 제목의 소책자 통해 뇌손상이나 정신박약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거나 ‘인간 존재의 공허한 껌테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바 ‘살 가치가 없는 생명’ 제거 주장은 1939년 ‘T4 작전’(Aktion T4)으로 장애 어린이들이 독극물이나 아사(餓死)의 형태로 살해당했고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성인 장애인들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용에 대한 사회정책적 입장이 이런 논의의 숨은 배경이라는 것이다. 지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장례는 매장이었지만 좁은 땅덩이에 무한정 매장할 수 없기에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화장문화로 바뀌었듯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초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락사는 초고령사회의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는 사회적 정책수단의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29)</sup>

이러한 점에서 단순하게 안락사의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논의 진행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안락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윤리적 규범을 고수하며 안락사를 고려하고 선택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외면한다고 하여 그들의 생각이 변하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직된 윤리적 도그마가 죽어가는 이들을 냉혹한 벽 밖으로 밀어 버려 우리 사회가 외면하는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죽어감의 고통스러운 과정에 들어선 이들이 한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과 무의미의 심연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며 그의 선택과 결단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한 듯싶다.

## VII. 마무리

보챔과 칠드리스(Beauchamp & Childress, 1994)는 일반적인 윤리 원칙(자율성 존중, 선행, 무해성, 정의)에 주목하여 윤리적 결정에 대한

---

29) 알렉산드로스 벨리오스, 『나의 죽음은 나의 것』, 최보문 옮김, 바다출판사, 2018.

접근방법을 제안했고, 이러한 원칙은 추상적 수준의 윤리적 수준을 압축하는 것으로 윤리적 추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일 것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죽음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의사는 죽음을 결정하는 환자의 자율, 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이나 법적 장치에서 여전히 '죽을 권리(Right to Die)'는 인정하지 않기에 생명을 끝내는 것까지의 자율성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행의 원칙은 고통을 제거하는 문제와 생명의 절단의 문제에서 과연 안락사가 환자에게 이득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어떠한 권리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이 지닌 불가침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런데 삶의 마무리에서 중대한 결정과 같은 안락사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따라 존중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환자의 최선의 이익으로서 '선행의 원칙'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또한 고의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에게 위험한 약을 투여하는 것은 '무해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사실 죽음과 관련된 어떤 행위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이 될 수 있지만 결과가 죽음에 이르렀기에 무해성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효과 원칙(principle of double effect)<sup>30)</sup>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생명윤리를 죽음에 적용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

---

30) 이중효과의 원리에서 네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옳은 효과와 그른 효과를 가져오는 개념이나 비개입이 정당화된다. 첫째, 행위 자체가 좋거나 중립적이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의 의도가 좋은 효과를 의도해야 한다. 셋째, 나쁜 효과는 좋은 효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앞서야 한다.

기도 있지만 죽음또한 삶의 영역으로 인입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대에서 생명윤리적 논의를 죽음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다.

이미 객관적인 상황이나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안락사 또는 정치권에서 발의된 소외 '조력 존엄사법' 등은 말기환자가 임종기를 맞이한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이나 선행의 원칙에 따라 점차 이를 법제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안락사와 관련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을 매개로 관련 종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탄생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지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말기환자나 임종기의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나 선행으로만 조력 존엄사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소극적 안락사가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마침내 반자발적 안락사마저 허용하게 될 거라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다시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서 장수가 오히려 긴 죽음의 과정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나 중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자살이나 간병살인과 같은 참혹한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답변해야 할 질문들을 유기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안락사를 위해 고국이 아닌 면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반대함으로만 지금의 실존적인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변화된 조건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에 맞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의 문제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사실 죽음 관련 윤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가 트롤리 사례 실험<sup>31)</sup>이다. 공리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자신의 그 담당 주체가 될 경우는 윤리적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사별한 본인으로서도 고인이 되신 부모님의 고통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자신이 가졌던 신념을 지키고 이를 관철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논쟁이 가지고 온 질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된다. 윤리적인 논쟁에서 윤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 감수성과 윤리적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면 이 또한 실존적인 죽음 앞에선 사람들의 괴로움 앞에서 자신의 모순성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개념규정이 갖는 인식의 오류들을 살펴보면서 안락사 관련 사례를 통해 관련 윤리적인 관점을 정리하였다. 사실 이 글은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왜 지금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사례정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풀어내고자 했다. 사실 첨예하게 대립된 논쟁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 기초한 상황인식에서 이에 따른 개념 정의들을 통한 논의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31)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Philippa Foot)과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은 윤리성을 실험하는 문제로 트롤리 문제(trolley problem)를 제기하여 위급한 상황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의 문제를 제기했다.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가 궤도를 따라 달릴 때 그 궤도 앞에 5명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있어 그대로 달리면 전차는 5명을 치어 죽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전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옆에 있다. 만약 이 레버를 당기면 전차의 방향은 바뀌고, 기존 궤도에 있는 5명은 살았으나 다른 궤도에는 1명은 죽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일까.

분명 많은 사람들은 안락사를 죽음의 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중적 여론 이면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점을 읽어내야 한다.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안락사 관련 사례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고 논의를 통해 윤리적 영역의 실천적 고민들이 깊어지기를 바래본다. 사실 현대 사회의 안락사 논쟁은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다. 그러기에 죽음의 역사와 스위스 안락사 현장 사례라는 제한된 사례를 통해 도덕적 아포리아(aporia), 도덕적 딜레마(dilemma)에 대한 질문과 사유를 제기한 것이 이 논문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말로 만이 아닌 보편성을 갖출 수 있을지, 지금도 괴로움 속에서 안락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박충구, 「현대인의 낯선 죽음에 대해」, 『현상과 성찰』, 2017.
- 백수원, 「죽음, 안락사, 생애마무리에 관한 협법적 논의: 생애마무리 지원 법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현법 연구』, 30(3), 2019.
- 송삼용,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한국교회법학회 30회 학술 세미나』, 2023.
- 신아연,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책과 나무, 2022.
- 안규백,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986, 2020.
- 알렉산드로스 벨리오스, 『나의 죽음은 나의 것』, 최보문 옮김, 바다출판사, 2018.
- 윤영호,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현황 및 향후 대책」, 『2022 연명의료 공개 Forum』, 2022.
- 이상복,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관점」,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8(1), 2005.
- 이상우,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J Korean Med Assoc』, 55(12), 2012.
-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 조태구, 「죽음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조력 존엄사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존엄사와 안락사」, 『죽음의 시공간』, 9(2023).
- 필리프 아리에스, 『죽음의 역사』, 이종민 옮김, 동문선, 1998.
- 홍순원, 「안락사와 존엄사: 목회상담을 위한 메타윤리적 연구」, 『신학과 실천』, 51(2016).
- Karl Binding., & Alfred Hoche, *Die Freigabe der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Bioethics*, 27(7), 2013, pp.402-408.

## 【 국문초록 】

이 글은 현대사회의 낯선 죽음의 이해와 존엄사와 안락사의 정의를 통해 개념적 혼동에서 오는 인식의 오류들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익숙한 죽음에서 낯선 죽음의 시대를 맞고 있는 죽음 역사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또한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의 사례를 통해 안락사의 동기와 현실, 특히 남겨진 자들의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살 권리와 죽을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찬반 논거의 주장을 살폈다. 의무론으로 설득되지 않는 시대에 지금도 괴로움 속에서 안락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낯선 죽음, 생명,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존엄성, 윤리적 실천

## 【 ABSTRACT 】

# The Issue of Life and Rights as a Case of Euthanasia

Yang, Jun Seok

(Hallym University of Korea · Life Education ·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mmarize the errors in the understanding of strange death and the definitions of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modern society.

First, the history of death and the era of strange death compared to a familiar death are described. The case of the Swiss euthanasia scene is studied, and the motivation and reality behind euthanasia, especially the problems affecting those who are left behind, are elucidated.

Through thi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are examined in the process of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die. In an era when the theory of duty has less weight, there is a need to highlight the stories of people who are still agonizing over euthanasia in public debate.

**Key words:** strange death, lif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self-determination, dignity, ethical practice